

##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

“믿을 수 있고, 멀리 보고, 거듭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.”

2014. 7. 15.



금융위원회

## 목 차

I. 필요성	1
1. 보험, 시대에 따른 변화가 요구	1
<참고> 우리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	2
2. 환경 변화와 우리 보험의 제도약 가능성	4
II. 보험 혁신 및 건전화 추진 기본방향	6
III. 주요 추진과제	8
1. 보험 신뢰 제고	8
2. 미래대비 기능 강화	15
3. 보험산업 혁신 유도	19
4.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	25
5. 상시적인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 구축	27
IV. 향후 추진계획	28

# I. 필요성

## 1 보험, 시대에 따른 변화가 요구

- 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

### <보험에 대한 인식과 반응>

- ① “복잡하다 · 어렵다” : 보험 상품은 보장내역, 약관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
  - \* A씨는 암보험을 드는 데 왜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,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역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음
- ② “돌려받는 보상이 미흡하다” :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에 비해 돌려 받는 금액이 적고, 보험금도 약속대로 받지 못하거나 깎이는 경우가 많음
  - \* B씨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
- ③ “필요한 보험은 없거나 못 듣다” : 실제 나와있는 상품이 회사별로 비슷 해서 상품비교가 어렵고 설계사 등 모집인들의 설명도 대동소이함
  - \* C씨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과거 병력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필요한 상품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수

- 급속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, 보험업은 그동안 변화의 모습이 미흡

- 그간 보험은 양적 성장을 통한 저변 확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저성장 기조,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
- 보험사는 국내시장에 안주하고, 일선 모집관행도 연고 · 관계형 중심으로 소비자에 맞는 상품·권유와 사후관리 미흡

⇒ 변화된 환경을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, 규제개혁을 통해 신상품 · 영역 개척과 새로운 파이를 창출하고 소비자 만족을 제고

◇ 보험 전반의 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,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혁신과 건전화를 이루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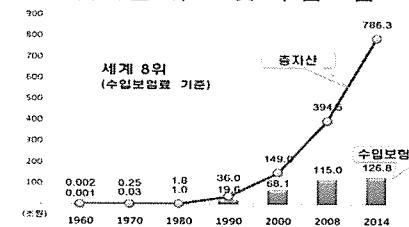
## 참 고

## 우리 보험 산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

◇ 양적 성장에 비해 소비자 신뢰나 미래대비 등 본연의 질적 성숙은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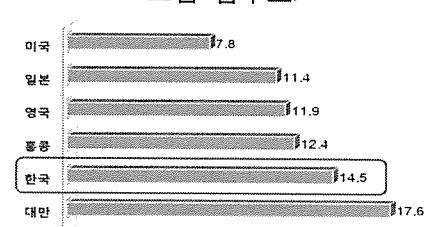
- (급성장) 급속한 성장을 통해 단기간내 “국민 보험시대” 구현

### <보험자산 규모 및 수입보험료>



출처 : 보험회사 주요통계(금융감독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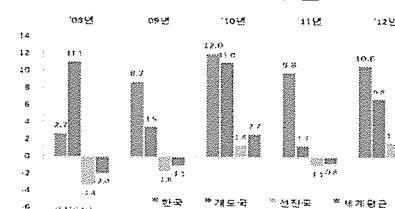
### <보험 침투도>



출처 : Swiss Pe Sigma '2012 World Insurance annual report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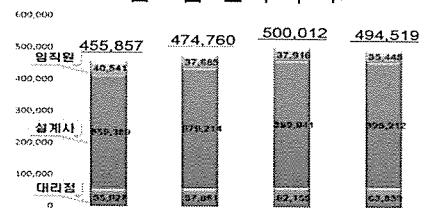
- (고용효과) 높은 성장률에 기반하여 모집인력 고용에도 기여

### <보험산업 성장을>



출처 : Swiss Pe Sigma '2012 World Insurance annual report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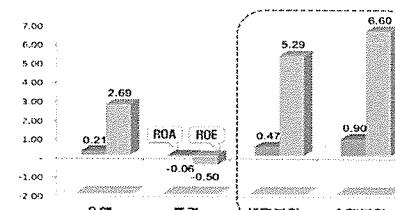
### <보험모집 인력 추이>



출처 : 보험회사 주요통계(금융감독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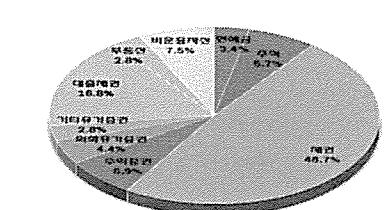
- (수익성) 他업권에 비해 수익성도 높고, 자산 구성도 안정적

### <업권별 수익성 비교>



출처 : 금융통계(금융감독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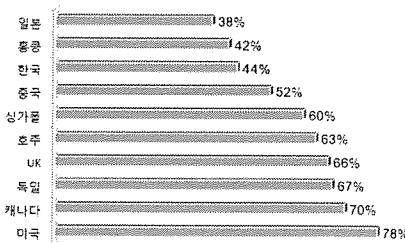
### <보험산업 자산구성>



주) 총자산 기준  
출처 : 보험회사 주요통계(금융감독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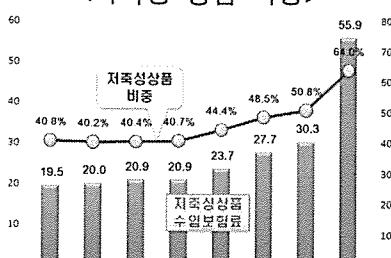
- (낮은 신뢰도) 여전히 보험에 대한 신뢰가 저조하고, 상품구성도 보험본연의 위험보장보다는 외형경쟁 중심의 저축성 상품에 치중

#### <보험산업 신뢰도 평가>



출처 : 2013 Insurance Voice of the Survey,Capgemin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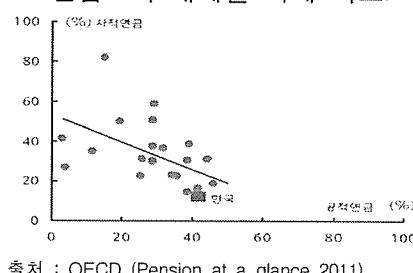
#### <저축성 상품 비중>



출처 : 보험회사 주요통계(금융감독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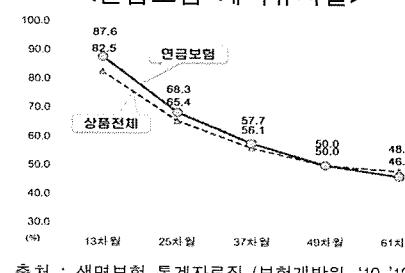
- (취약한 미래대비 기능) 낮은 소득 대체율에도 불구하고 계약 유지율이 낮아 미래대비를 위한 소득보장 인프라로서의 기능 취약

#### <연금소득 대체율 국제 비교>



출처 : OECD (Pension at a glance 20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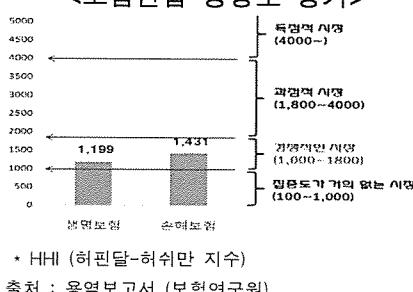
#### <연금보험 계약유지율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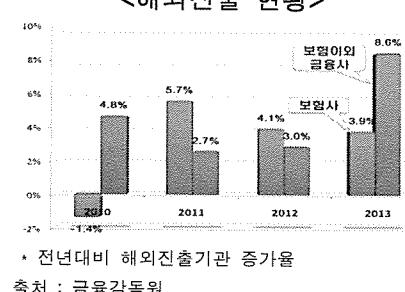
출처 :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(보험개발원, '10-'12)

- (국내시장 안주) 국내시장 경쟁에만 몰두하고 해외진출도 저조

#### <보험산업 경쟁도 평가>



#### <해외진출 현황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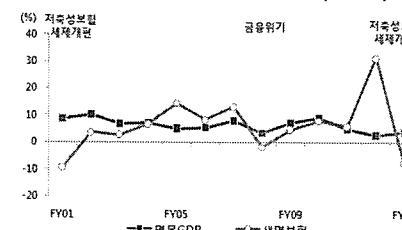
## 2 환경 변화와 우리 보험의 재도약 가능성

- ◇ 직면한 도전 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'재도약'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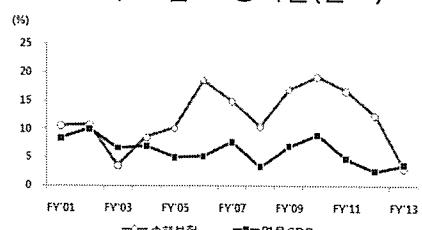
### 1 보험이 처한 환경적 요구

- (저성장 기조)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인해 과거의 전략을 단순 유지해서는 성장세 악화를 면하기 곤란

#### <GDP와 보험료 증가율(생보)>



#### <GDP와 보험료 증가율(손보)>



- (인구구조의 변화) 고령화\*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확대\*\*되고,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과거와 같은 보험수요 증가가 근본적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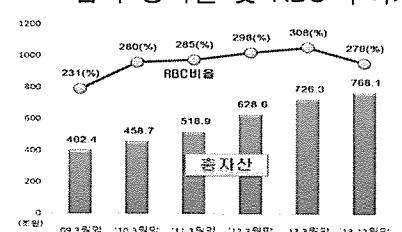
\* (65세 이상/20~64세): 15.3%(2000년) → 91.4%(2050년)

(65세이상/14세 미만) : 125.9(2020년) → 429.3(2050년); 일본(337.5) 독일(258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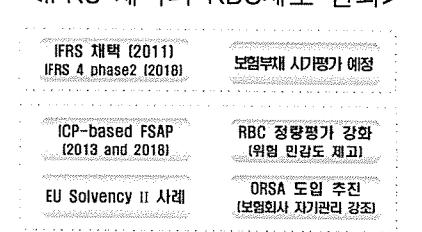
\*\* 국민건강보험 예상 적자 : 5.8조원('15년) → 49.6조원('30년)(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)

- (재무건전성 강화 요구)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도 가일층 요구되는 상황

#### <보험사 총자산 및 RBC 추이>



#### <IFRS 채택과 RBC제도 변화>



## 2 새로운 성장·비즈니스 기회의 대두

- (신종위험 보장) 과거에 없던 복잡·다기화된 신종 위험에 대한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
  - 특히, 날씨,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수요가 늘고 있고, 고가(高價)상품 등 제조업과 연계된 보상보험도 새로운 기회
    - \* (미국) 카트리나 등 대형재난에 대한 보험의 인수능력 보완을 위해 자본시장과 연계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재난을 Event로 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 부여
    - \*\* (일본) 일반 대리점과 연계하여 소액보험(Mini Insurance) 시장 활성화 중
- (고령화의 비즈니스화) 노후인식 제고로 주택연금, 고령자 대상 보험, 생애주기 자산관리업 등 고령화에 따른 신수요가 급격히 부각
  - 또한, 세계적 수준의 IT·인프라기술, 우수 인재 등으로 융합을 통한 신사업\* 개척 시 혁신 잠재력이 충분
    - \* 건강보험 판매와 연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등
- (보험의 자본시장 역할 확대)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빠르게 축적될 연금자산은 보험의 자본시장 Player 역할 활용 기회
  - \* 우리와 경제규모, 여건 등이 유사한 호주가 '92년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금융발전을 이룬 경험을 Role 모델로 활용 가능
  - 특히, 우리나라의 경우 축적 자산의 규모 경제 효과에 근거하여 이미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임
    - \* '13년 운용수익률 비교 : (생보) 4.6%, (손보) 4.0% (주식형펀드) 1.2%
  - 실물경제가 과거와 같이 高성장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는 보유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新성장동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
- ◇ 이러한 환경 변화에 과거의 낡은 제도로만 대응하면 새롭게 제도약할 기회도 상실할 우려  
⇒ 직면한 도전요인을 우리 보험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

## II. 보험 혁신 및 건전화 기본방향

- ◇ 보험 분야의 ‘좋은 규제(Better Regulation)’ 시스템”을 확고히 구축  
⇒ 「신뢰제고」「미래대비」「산업혁신」의 3대 방향에서 추진
  - ※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
    - (시장질서·소비자보호) 엄정 시장규율, 자기책임 원칙
    - (영업·상품개발 등) 자율 확대, 창의·혁신 유발

### 1 보험 신뢰 제고

-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일선 모집질서 건전화 유도로 소비자가 ‘믿고 찾을 수 있는 보험’ 유도
  - ▶ 모집질서 교란행위 정화 및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
  - ▶ 보험상품 공시 강화 및 상품 가입 채널 다양화
  - ▶ 불공정 행위 억제 및 보험금 지급 불만 해소

### 2 미래대비 기능 강화

- 과거 내자조달과 모집인력 고용의 소극적 역할을 벗어나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전망의 기둥으로서 위험보장(Risk Management) 기능 대폭 강화
  - ▶ 연금상품 편의 제고 및 신종위험·미래 대비 상품개발 유도
  - ▶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
  - ▶ 연금가입 지원 및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

### 3 보험산업 혁신 유도

-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자율과 창의에 근거한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업무자율·경쟁 촉진 유도
  - ▶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립금 적정화 및 가격 경쟁 촉진
  - ▶ 실물자원 및 자본시장 Player로 기능토록 자산운용 여력 확충
  - ▶ 능동적 건전성 강화 유도 및 국제 회계기준 변화 대비

## <보험 혁신 및 건전화 추진 체계>

### “차원높은 위험보장”

안전제고 + 노후대비 + 시장창출

#### 보험의 혁신 및 건전화 유도

##### 보험 신뢰 제고

- 소비자 알 권리
  - 상품공시 개선
  - 안내자료 평가
- 모집질서 확립
  - 모집이력관리시스템
  - 보험사기방지 시스템
- 채널선택 확대
  - 단종보험 대리점
  - 온라인보험슈퍼마켓
- 보험금 불만 해소
  - 불공정 행위 억제
  - 부자급 사례 공시

##### 미래대비 기능 강화

- 연금상품 편의
  - 인출기능 부여
  - 사망보험금 연금화
- 신종위험 상품
  - 지수형 날씨 보험
  - 대재해 채권
- 장수 리스크
  - 장수채권 발행
  - 장수리스크 명시 반영
- 연금가입 제고
  - 운용규제 완화
  - 가입인센티브 지원

##### 보험산업 혁신 유도

- 상품경쟁 촉진
  - 신종위험률 활용
  - 보험료 다양화 유도
- 자산운용 규제완화
  - 해외 금융업 영위
  - 일반계정 자금이체
- 보험사 건전성 제고
  - 준비금 적립 적정화
  - 지급여력 강화유도
  - 국제회계기준 대비

#### 부작용 차단 및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

##### ◇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

- 계속·반복적 위법행위 제재강화
- 명료·엄정한 퇴출기준 마련
- 과태료·과징금 부과체계 정비

##### ◇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

- 보험규제개혁 TF 상시·정례화
- 보험입법 자문단 구성
- 보험 규제건의 통합 창구 마련

## III. 주요 추진과제

### 1 보험 신뢰 제고

#### 가. 소비자 알 권리 제고

##### □ (소비자 중심의 상품공시)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 개선

- 중복·과잉<sup>\*</sup>으로 오히려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,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

\* 주요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·가입설계서 분량이 15~20장에 달함

##### ○ 상품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공시위원회<sup>\*</sup>의 소비자 위원도 확대

\* (현행) 협회임원 중 공시위원장 선임, 보험업계 3인 Vs 소비자단체 1인

##### □ (기대효과)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를 위한 공시체계 구축 지원

##### □ (보험상품 이해도 평가 확충) 보험가입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참고하는 보험 안내자료<sup>\*</sup>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

\* 핵심상품설명서, 상품설명서, 가입설계서 등

##### ○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도 우수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<sup>\*</sup> 추진

\* 보험사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업계에서 공유톡록 조치

##### □ (기대효과)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 작성율 유도하여 소비자 이해도·수용성 제고

##### ※ 종장기적으로 보험약관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체계 수용추이를 보아가며 보험사별 순위공개 등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

□ (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) 단체보험\*이라도 가입자(피보험자")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·안내

\*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단체보험 (예: 단체 여행자 보험)

\*\*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현재는 상법·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

▣ (기대효과) 단체보험 가입자 보호 및 사후분쟁 감소 기대

## 나.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

□ (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) 시장 기능에 의한 보험 모집 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·관리

\* 모집계약 현황, 불완전판매 현황,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

○ 보험회사·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

- 모집정보 범위와 정보조회 방법·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○ 보험회사·대리점은 소속 설계사 위촉 시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,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

▣ (기대효과) 시장 기능에 의한 불량 설계사 퇴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인적 모집환경 조성

※ 종장기적으로 불량 설계사 퇴출 외에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우수 설계사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

□ (GA 관리·감독 강화) 일정규모 이상(예: 500인)의 보험대리점에 대해 관리·감독 강화\* 방안 마련

\*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후 부실 대리점 진입 억제 및 실효적 퇴출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 강구

▣ (기대효과) 대형 대리점의 전횡을 선제 차단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 모집질서 확립

※ 종장기적으로 판매자 책임원칙 차원에서 실질적 배상능력 확보를 전제로 대형 GA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

□ (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)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

○ 보험회사 → 금감원 → 검찰·경찰간 보험사기 인지·조사·수사 과정의 연계\* 체계 강화 및 각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

\*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고, 금감원은 여러 보험 회사의 보고 건을 취합·조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

## <단계별 제도개선 방안(예시)>

① (보험회사 인지 단계) 보험사기 의심 건을 효과적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통합 보험정보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확충\*

\* 현재 분산·관리되고 있는 보험정보를 통합·관리하고,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분석결과를 보험회사에 제공

② (금감원 조사 단계) 보험사기 입증수단을 다양화\*하고,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 인력·조직 확충도 검토

\*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, 공공정보 열람 등

③ (보험사기 재판 결과 활용) 법원의 보험사기 재판 결과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자 보험가입 제한,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및 보험사기 인지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자료\*로 활용

\* 보험사기자 이력관리 및 보험사의 조회기능 확대를 통한 진입 제한, 새로운 보험사기 인지규칙 발굴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에 반영 등

○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급 지급 시, 보험사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 마련

▣ (기대효과)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적정화

※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 구제, 보험금 청구를 억제하는 보험회사의 소송 남발 관행 개선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적극 추진

## 다.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

- (제품·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)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·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**보험상품\*** 허용

\*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가 제품·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하여 태블릿 PC,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 제공

### <제품·서비스 연계보험 사례>

A씨는 종합가전판매점(단종대리점)에서 L사(제조사, 계약자)의 태블릿PC를 구입하면서 판매원(단종설계사)의 권유로 2년간 파손시 연간 20만원 한도내(1만원 공제)에서 수리비를 보장하는 5만원 상당의 태블릿PC보험에 가입하였다. 약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1년 후 A씨는 사용 중에 떨어뜨려 액정(18만원 상당)이 깨졌고, 이를 L사가 운영하는 A/S센터에서 공제금 1만원을 차불하고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(→ 수리비는 A/S센터와 보험사간 정산).

- 개인보험뿐만 아니라 제품·서비스 제공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구매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**단체보험 형태\***도 허용

\*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출시 전 금감원에 신고토록 규제

### ※ 제품·서비스 연계 보험(단체성)의 특징

- 제품·서비스 제공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자(가입자)를 위하여 보험 회사와 체결하는 단체성 보험계약
- 판매한 제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소비자의 손실 또는 책임을 보전
-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 내 체결
- 제품·서비스 제공자는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보험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수행

- 다만,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, 보상 책임 명확화 등 보험상품 제공자간 역할·책임 명확화

- ☞ (기대효과) 소비자 과실에 의한 전자제품 파손 시 수리보장, 가전, 중고차 구입, 공연예매 등 향후 다양한 제품·서비스에서 연계보험 출현이 활성화

- (단종보험대리점) 제품·서비스 연계보험과 관련하여 이를 취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\*

\* 예시)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시 주택종합보험 판매,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(파손시 수리 보장) 판매 등

-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소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,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(자격 시험, 교육 이수 등) 완화

- 다만, 초기에는 도입이 용이하고 시장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

### <단계별 확대방안(예시)>

구 분	1단계	2단계	3단계
보험 상품	주택회재보험, 가정종합보험, 부동산권리보험, 법률비용보험 등	배상책임종합보험 애견 건강보험, 제품보증연장보험, 휴대폰보험 등	채무면제유예보험 자전거보험
대리점 업종	공인중개사사무소 법률사무소(법인) 등	아파트관리사무소 동물병원, 유통업체, 이동통신사 등	신용카드사 자건거 판매상 등

※ 단종보험 시장규모는 7,600억원으로 손보사 원수보험료의 1.3%로 추정

- ☞ (기대효과) 소비자가 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·장소에서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편리하게 가입 가능

- (온라인 보험수퍼마켓)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·조회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 검토

-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순·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

- ☞ (기대효과) 소비자가 자기판단 하에 편리하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 만족도 제고 및 사후 분쟁 소지 완화

## 라.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

### □ (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)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\*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

\* 현재 보험금 산정·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% 차지

- 현행 보험업법은 ① 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고, ② 표준약관을 통해 절차상 위반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제재
- 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불공정보상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엄정 제재하는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
- 해외 사례를 준용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, 보험금 포기를 위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 등 유형을 보험업법에 규정
- 위반 보험사에 대해서는 건별로 과태료(1,000만원)를 부과

#### ※ 미국 보험업법 또는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(예시)

-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
-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
-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
-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
-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

### □ (기대효과)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절차 미준수·미안내, 부당 삭감 및 악의적 보험조사 등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 억제

### □ (보험금 부지급·삭감 사례 안내) 보험권유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\* 안내(상품안내자료에 포함 등)

\*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사례 빈번

- 협회 차원에서는 부지급·삭감 여부가 결정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공시 명행

### □ (기대효과) 실질적인 보장이 어려운 보험 상품 가입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·분쟁 감소

### □ (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공개)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현황 공개

-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현황을 정기 공시사항으로 반영

### □ (기대효과) 가입자에게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험금 지급 회피를 위한 악의적 소송남발 억제

### □ (보험금 지급 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) 계약자 등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\*만 거쳐도 보험금 청구·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

\* 신용카드, 휴대폰, I-Pin 및 공인인증서 인증 등

- 보험가입 조회시스템과 연계하여 한 곳에서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·지급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

### □ (기대효과) 보험금에 대한 청구·지급 현황 확인이 용이해져 계약자 권리보호 강화와 편의 제고

## 2 미래대비 기능 강화

### 가. 연금상품 편의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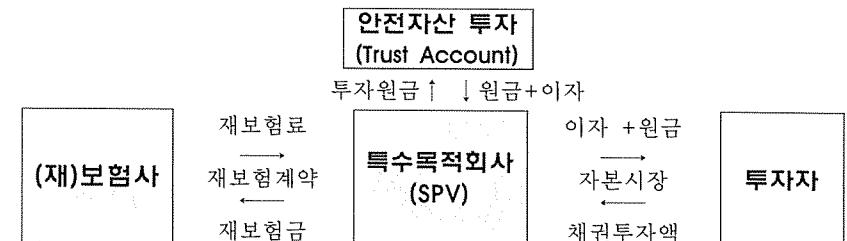
- (연금수급방식 개선 상품)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,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
  - \* 연금가입시 정한 의무비율 이내(예 : 25%) 또는 특정 이벤트(의료비, 학자금 수요 등) 발생시 연금적립액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
- (기대효과) 긴급한 일시금 수요로 인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 노후자산 형성 지원
- (비건강인 연금상품)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\*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
  - \* 장애인(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'14.5월 출시), 노인장기요양인, 중대질병자
- (기대효과) 건강이 좋지 못해 종신 연금상품 가입을 주저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노후자산 확보 유인 부여
- (고령자 특화 연금상품)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하여 높은 연금액 지급
  - \*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충분히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
- (기대효과) 본인의 예상보다 생명이 길어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

### 나.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

- (지수형 날씨보험 허용) 자연재해,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(미국, 영국 등은 이미 허용 중)
- (기대효과)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에 위협을 받는 기업 및 개인(놀이동산 음식점 사장, 맥주회사 등)의 경영 안정성 확보

- (대재해채권 도입) 거대재난(美 카트리나 등)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CAT-Bond(Catastrophe Bond) 도입 검토
  - 보험회사가 정상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,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체권화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
    - \* 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사(원보험사, 재보험사) 외에도 일반기업, 정부기관, 연기금, 헤지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 참여 유도

#### < 대재해채권 발행구조 >



- 1) 실제 대재해 발생 시 원금 손실이 있지만, 발생빈도(통상 10년 이상)가 높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단기인 채권만기(1·3·5년 등)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,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(국채수익률 + @) 실현 가능
- 2) 전세계 CAT Bond 발행규모(\$) : ('07) 83억 → ('09) 38억 → ('11) 44억 → ('13) 74억  
CAT Bond 시장구성(13.9월 기준) : 美 원보험사 40%, 美 정부 22%, 유럽 재보험사 19%, 유럽 원보험사 10%, 日 원보험사 5%, 기타 4%
- (기대효과) 기존 재보험시장의 담보여력을 초과하는 거대 위험에 대한 보험 인프라 확충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
- (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) 新보험수요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 추진
  - \*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: 연안 체험활동중 피해 보상  
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: 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보상
- (기대효과) 사고 유발자의 충분한 배상능력 확보를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·신속성 제고,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효과 기대

## 다. 장수 리스크 대비

- (장수채권 도입)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(Longevity Bonds)\* 발행 추진
  - \* 장수리스크 관리대상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
- (기대효과) 장수리스크의 일부를 분산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노후대비 유도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부담 최소화
- (장수리스크 선제 관리 강화) 연금판매 금융사가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금, 상품개발 제도 보완\*
  - \* (책임준비금) 기대수명 추이를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정 단계적 조정 (상품개발) 연금상품 개발 시 고령화 리스크 반영 및 준비금 적정성 점검
- (기대효과) 장수리스크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여 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

## 라.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

-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
- (연금저축 가입시 혜택 강화)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
  -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대비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 추진
- (기대효과) 연금가입 인센티브가 낮아 연금저축 납입을 꺼리던 금융소비자가 연금저축 가입 또는 납입액 확대 유도

- (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) 연금저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의 연금저축가입 지원방안 검토
  - (기대효과) 저소득층 및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필요 최소한의 노후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

## 마.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

-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
- (일시금 수급경향 완화)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
  - (기대효과) 사업자금 등 수요로 인해 퇴직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
- (운용규제 완화) 세분화된 개별 위험자산별 보유 한도\*를 폐지 또는 단순화
  - \* DB형 : 펀드(채권형제외) 50%, 우량채권 등 50%, 주식 30% 이내 등  
DC형 : 주식 · 비우량채권 · 파생결합증권 등 직접투자 금지, 주식형 펀드 40% 이내 등
- (기대효과)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를 통해 연금 수익률 제고

- (디폴트 옵션 도입 검토)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영
  - (기대효과)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문제를 방지
- (계약형 방식 다양화) 특정금전신탁 · 보험계약에 한정된 연금계약 방식을 다양화
  - (기대효과)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선택권 확대 및 운용 전문성 강화

### 3 보험산업 혁신 유도

#### 가.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

- (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출시 지원)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·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

\* (현황) 암보험은 적정 보험료 예측이 어려워 '05년부터 '12년까지 판매 중지한 전력

- 현재 위험률<sup>\*</sup>에 30%까지 안전할증률을 부가할 수 있으나, 장래 보험금 예측이 어려운 위험보장은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

\*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

- (기대효과) 암보험 등 질병보험에 대한 고령자, 치료가 용이한 질병 보유자의 보험가입 활성화

(사례) 당뇨,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보다 많아지고, 통계부족으로 상품개발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·장애인 및 현물급부 보장 상품도 시장에서 제공이 가능

- (건전한 보험료 경쟁 유도) 보험사는 자기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 제출

\* (현황)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나, 표준이율 및 구두 지도에 근거하여 대부분 보험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한다는 지적

- (기대효과) 보험사별로 차별화된 보험료 산출을 유도하여 건전한 경쟁 촉진 및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

- (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 도입)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

\* (현황) 저축성보험 원금도달 시기: 공시이율 6% 5년 → 공시이율 3% 8년

- 저축성보험은 표준(시중)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<sup>\*</sup>하도록 설계,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지속 검토

\* (안) 환급률 100%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

- (기대효과) 환급금 감소 및 보험료 인상 효과를 보험사도 함께 부담

- (상품개발 기준 개선) 상품 안내가 부실<sup>\*</sup>해지거나 불필요한 보험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상품개발·심사 기준 개선

\* (현황) 참조위험률의 산출 일정이 축박해 상품개정이 지연되고, 신고상품 판매 일정도 불확실해지게 됨에 따라 적기에 모집인 상품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함

- 방카상품 중 단순 개정은 사전신고<sup>\*</sup>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하고, 참조위험률은 변경 시행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고(현행:30일), 신고상품의 신고일부터 판매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(현행:30일이내)

\* '13년 전체 신고상품 중 단순 방카상품 변경이 48% 점유(519건÷1087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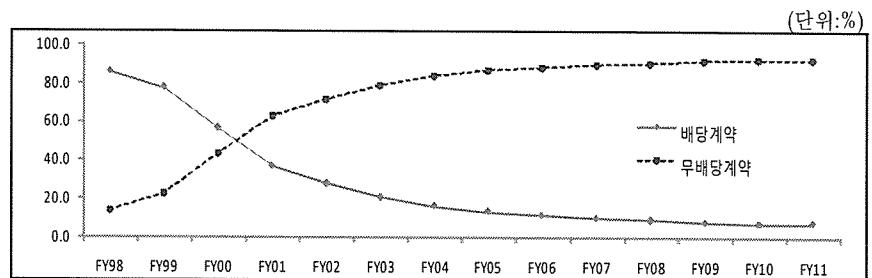
- (기대효과) 보험사가 상품판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모집인 교육 및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

- (유배당 상품 활성화)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율을 변경<sup>\*</sup>이후 상품 출시가 거의 중단<sup>\*\*</sup>된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\* 계약자 지분율 70%에서 90%('00년)까지 확대함 → 주주지분은 10%로 감소

\*\* 수입보험료의 7.7%까지 매출 하락, 현재 유배당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이 유일

[ 유배당·무배당 상품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]



-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화<sup>\*</sup>하고 보험사에 판매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

\*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이익배분율을 결정할 예정

- (기대효과) 단종 위기에 있는 유배당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유·무배당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

## 나. 자산운용 규제 완화

### 1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 확대

- (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 허용) 보험사가 거래 가능한 외화 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·출자지분 추가
  - \* 他업권(은행, 증권 등)은 이미 국내·외 PEF의 주식·출자지분 투자가 모두 허용
- ☞ (기대효과) 다른 업권과의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국내 PEF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 유도
- (부채 리스크 관리 지원) 보험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,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하여 단순 위험관리 목적의 자산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
  - 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 상품 한도<sup>\*</sup>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
  - \* 변액보험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6% 이내(장외 파생상품 3%)
- ☞ (기대효과) 급격한 주가 및 채권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 혼란기에도 변액보험이 안정적인 보험금 및 연금 지급 가능
- (비상위험준비금의 지급여력 인정) 비상위험준비금<sup>\*</sup>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 금액(이연법인세)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
  - \*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손보사가 적립하는 금액(회계기준상 자본항목)
- 이연법인세는 올해까지만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할 예정이었으나, 국제사례 및 회계처리 기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인정을 허용
- ☞ (기대효과) 지급여력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

- (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 확대) 모든 특별계정 상품판매 초기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계정의 자금이체 허용

\* (현행) 변액보험 등 Positive 방식 → (개선) 모든 특별계정 상품 Negative 방식

- ☞ (기대효과) 초기 투입금 확보로 양질의 자산 투자기회 부여

- (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)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사실상 어렵고 상품·유가증권 투기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

- ☞ (기대효과) 투자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

### 2 해외진출 여건 조성 및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 활성화

- (해외현지 일반 금융업 영위 허용)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(은행·증권) 영위 허용

- ☞ (기대효과) 他금융업 노하우 습득 및 해외진출 여건 강화

- (해외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 개선)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신고절차로 완화

- ☞ (기대효과) 해외 진출절차 간소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

- (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완화)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 (지분 15% → 30%)

- ☞ (기대효과) 보험사의 대체투자 여력 추가 확보 및 활용 지원

- (벤처 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) 벤처 투자조합 등<sup>\*</sup>을 자회사로 소유시 동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<sup>\*\*</sup>폐지

\*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융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
\*\*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제한(총자산 2%),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·주식투자 제한(총자산 3%)

- ☞ (기대효과) 보험사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창업, 벤처 투자 활성화

## 다.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

- (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)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\* 산출방식 변경

\*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

-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의 연계성\*을 키우고, 금리 지표를 다원화\*\*하여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 확보

\* (현행) 3.5%+안전계수×시중금리 → (변경안) 금리구간별 안전계수×시중금리

\*\* (현행) 국고채 10년 → (변경안) 국고채 5년, 10년, 20년

-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 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\*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

\* (안) 지급여력비율이 150%이상일 경우 표준이율 0.25%p 높게 적용

✓ '15년 표준이율은 '14년과 동일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

✓ IFRS 2단계('18년 예정) 시행시 책임준비금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직접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이후 표준이율의 영향은 제한적

- ☞ (기대효과)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화 및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 가능

- (보험사 지급여력 강화) 지급여력(RBC\*)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,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, '16년까지 단계적 시행\*\*

\* 보험부채 이외에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위험자기자본

\*\* 국제기구 평가 및 IFRS 2단계 일정('18년)을 고려하여 '16년까지 완료

-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(150% 수준)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\*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

\* (예시) 희망수준의 주주배당 허용, 신규계약의 보험료 인하여건 제공 등

- ☞ (기대효과)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의 합리적 일정 마련

- (공시이율\* 조정범위 확대)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%에서 20%까지 조정범위 확대

\*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

-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\*을 함께 마련

\*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, 환급율 예시 강화 등

✓ 금리파당 경쟁으로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20%에서 10%로 축소('13.4월) 하였으나, 경쟁제한 및 리스크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

✓ 조정범위 확대로 기존 고금리 상품의 부담을 신규계약에 전가시키려는 경우 보험사의 판매 경쟁력 멸세로 작용

### [ 보험사별 운용자산이익률 및 부담이율 현황 비교 ]

구 분	운용자산 이익률(A)	준비금 부담이율(B)	차이 (A-B)
기존 보험사 (고금리 계약 보유)	4.56	5.25	△0.69
신설 보험사	4.55	4.80	△0.25

- ☞ (기대효과) 공시이율의 조정범위 확대로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 촉진 및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 등 보험사의 책임경영 강화

- (국제회계기준 대응)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·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미리 대응

- 전문가 T/F\* 등을 구성하여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, 조속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

\* 금감원, 학계, 보험개발원, 보험사 등으로 구성

- ☞ (기대효과) 글로벌 회계기준 변화에 선제적·능동적 대응 유도

※ RBC 등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로드맵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

## 4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

□ (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마련) "소비자 권리 침해"가 이루어진 경우도 보험사·대리점 등에 대한 행위제재 요건으로 규정

○ 현행 제재규정은 "전전경영 훼손"만 요건<sup>\*</sup>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리 침해 시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

\* 보험업법 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 및 제136조(보험대리점에 준용)

○ 특히, 권리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<sup>\*</sup>하여 등록·허가 취소나 영업 전부정지 등도 가능토록 하며 제재의 실효성 대폭 강화

\* 부당승환계약 금지, 불완전판매 금지(법 97조), 기초서류 준수의무(법 127조의 3) 등

☞ (기대효과)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및 예방 가능

□ (계속·반복적 위법행위 제재강화) 보험사·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 서류 등 중요사항의 계속·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 근거 마련

○ 중요사항<sup>\*</sup> 위법행위가 상습화·반복화(예: 2년내 3회 위반 반복 등) 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 근거 도입

\*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·이익처리 위반, 설명의무 고의누락, 부당승환 계약 유도 등

☞ (기대효과) 계속·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원칙 확립과 사전 억제 및 예방 강화로 건전한 보험산업 조성

□ (대형 보험대리점 규율 강화) 금융기관 보험대리점, 대형 GA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 마련

○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(꺾기),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<sup>\*</sup>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 제재

\* 평균 위반횟수, 대리점 규모, 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 마련

☞ (기대효과) 시장규율 확립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실질화

□ (퇴출 대리점 우회진입 방지) 법령위반으로 퇴출되었던 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우회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<sup>\*</sup>

\* 중장기적으로 설계사 모집이력시스템을 보험 대리점의 우회 등록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

○ 퇴출되었던 대리점주가 친인척, 지인 명의로 보험대리점을 등록하고 사실상 보험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빈발

○ 보험업법의 등록거부 사유에 위와 같은 우회등록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은 추후 마련

☞ (기대효과) 부실 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제도의 실효성 확보

□ (과태료·과징금 체계 정비) 시장현실에 맞게 과태료·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·현실화하고 부과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

○ 보험사 등 규모<sup>\*</sup> 감안시 현재 과태료 상한액 5천만원은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

\* '14.3월 현재 생보사 전체 자산규모는 600조(삼성 194조, 한화 83조, 교보 75조)

○ 법적 안정성, 예측가능성 제고 및 제재수준 강화에 조응하여 현행 과징금·과태료 부과기준<sup>\*</sup>을 상위 법령에 규정화 추진

\* 현재는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별표로 타 금융업권과 함께 규정

☞ (기대효과) 제재의 실효성 및 제재체계 제도적 정합성 제고

□ (제재체계 점검 정례화) 제재 및 과태료·과징금 기준 정례 점검 추진

○ 주기적(예: 1년)으로 감독원과 제재 양정기준을 협의·검토하고 동 검토내용 및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조치

☞ (기대효과)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체계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

## 5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 구축

- (보험규제개혁 TF 상시정례화)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 수시 발굴 및 의견 수렴, 구체화를 위한 규제개혁 TF 구성·상시 운영
  - \* 업계 전문가, 보험연구원, 보험협회, 개발원, 학계, 감독원 등
- 매 분기 보험 분야 주요 이슈 및 규제개선 건의 과제 검토
  - \* 필요시 보험연구원을 중심으로 중장기 과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
- 매년 9월로 예정된 “금융규제 정비의 달”에 맞추어 보험 분야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
- ☞ (기대효과) 규제개선 과제의 사전 공론화 및 추진 타당성 제고
- (입법 자문단 구성)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보험입법 자문단 구성
  - \* 보험법학회, 보험학회, 소비자 단체, 보험연구원, 보험협회, 개발원 등
- ☞ (기대효과) 보험 규제개선 과제의 신속·체계적인 입법화 추진
- (분야별 협의체 활성화) 보험사기, 정보, 공공보험 연계방안 등 유관기관 중요 협업과제에 대해 협의체널\* 활성화
  - \* 보험조사협의회, 보험정보협의회, 개인의료정책협의회 등
- 회의 개최 활성화와 함께 문제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 보험규제 개혁 TF와의 이슈 공유를 통해 피드백 기능도 강화
- ☞ (기대효과) 중요 보험이슈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동력 확보
- (규제건의 통합창구 마련) 보험 유관기관 공통 대표전화 및 창구 운영
  - \* 금융위, 금감원, 보험개발원, 보험협회 공동으로 대표 전화 마련(가칭 ‘1414’)
- ☞ (기대효과) 현장 중심 과제 발굴(Bottom-Up) 및 체감효과 제고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### 가 추진 원칙

- (조기개선) 금번 발표 과제는 하반기에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즉시 착수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
- (체감효과 중심) 가시적 체감 성과가 도출되도록 일선에서의 업계 반응·전문가 의견 등을 철저하게 점검·관리·피드백
- (장기과제) 미래 지향적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,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미세조정

### 나 향후 일정

-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(유권해석, 모범규준 등)은 즉시 추진
  - \* (예시)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, 보험금 부지급·삭감 사례 안내 등
- 단순 사업(시스템 구축, 상품출시 등)도 로드맵 확정 후 즉시 착수
  - \* (예시)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, 보험금 지급현황 조회,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등
- 하위법령(시행령·감독규정·시행세칙 등) 개정 사항은 금년 내 완료
  - \* (예시) 상품 신고기준, 보험사 건전성 제고,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
- 법 개정사항은 금년 내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
  - \* (예시)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,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,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

## 다 과제별 추진일정

정책 과제	추진일정	조치사항	소관기관
<b>보험 신뢰 제고</b>			
① 소비자 중심의 상품공시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금융위 금감원
②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	'14.하	보험업법 개정	금융위
③ 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	'14.하	보험업법 개정	금융위
④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	'14.하 '15.상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스템 구축	금융위 협회
⑤ 보험대리점 감독 강화	'14.하	연구용역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	금융위
⑥ 보험사기 방지	'14.하	보험업법 개정	금융위
⑦ 제품·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	'14.하	보험업법 개정	금융위
⑧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 도입	'14.하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	금융위
⑨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도입 검토	'15.상	시스템 구축	협회
⑩ 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	'14.하	보험업법 개정	금융위
⑪ 보험금 부지급·식감 사례 안내	'14.하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	금융위
⑫ 보험사 소송 건수 공시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⑬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조회 편의 제고	'14.하 '14.하 '15.상	지도 공문 발송 보험업법 개정 일괄조회시스템 구축	금융위 금융위 관계기관
<b>미래대비 기능 강화</b>			
① 수요자의 Needs에 따른 다양한 개인 연금 상품 개발	'14.12월	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통계집적 및 상품개발('14.12월) * 상품출시('15년)	금융위 금감원
② 지수형 날씨보험 허용	'14.하	관련 보험상품 판매 허용	금융위 금감원
③ 대재해채권 도입 검토	'14.하	법률, 제도 정비사항 등 도입방안 검토	금융위
④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	연중	보험상품개발 지원 및 관련 부처 협의 연구용역('14.5월~1	금융위 금감원
⑤ 장수리스크 관리강화	'14.하	1월, 보험연구원), 관계부처 협의 등	금융위 기재부
⑦ 사적연금 인센티브 지원	'14.12월	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확정	금융위 기재부
⑧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방안	'14.12월	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	금융위 기재부 고용부

정책 과제	추진일정	조치사항	소관기관
<b>보험산업 혁신 유도</b>			
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출시 지원 (위험률 안전활증 확대)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② 건전한 보험료 경쟁 유도 (보험료 결정 관련 신고기준 마련)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금융위 금감원
③ 저금리 시대 소비자 부담 완화 (사업비 및 상품구조 개선)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④ 상품개발 기준 개선 (방카신고 기준 완화 등)	'14.하	보험업법, 보험업법시행령 개정	금융위
⑤ 유배당 상품 활성화 (주주 배당률 합리화)	'14.하	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	금융위
⑥ 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투자 허용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⑦ 부채 리스크 관리 지원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⑧ 자본성격 부채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(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 부채)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⑨ 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 확대 (특별계정 자금이체 상품 확대)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⑩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	'14.하	보험업법 개정	금융위
⑪ 해외현지 일반 금융업 영위 허용	'14.하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	금융위
⑫ 해외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 개선	'14.하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	금융위
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완화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⑭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	'14.하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	금융위
⑯ 충분한 책임준비금 적립 (표준이율 개선)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금융위 금감원
⑯ 보험사 지급여력 강화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	금융위 금감원
⑰ 공시이율 범위 확대	'14.하	보험업감독규정 개정	금융위
<b>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</b>			
① 보험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제재 정비	'14.하	보험업법 개정	금융위
<b>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 구축</b>			
① 보험규제개혁 TF 상시·정례화	즉시	보험규제개선 TF 구성·운영	금융위
② 입법 자문단 구성	즉시	보험업법 자문단 구성	금융위
③ 분야별 협의체 활성화	즉시	유관기관 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	금융위
④ 규제건의 통합창구 마련	'14.하	보험 유관기관 공동 대표전화 및 창구 운영	관계기관 합동